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5 선고 2013가단12550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21 선고 2017나4476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5 선고 2013가단125504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 당사자)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7. 5. 24

판결선 고 2017. 6. 15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 및 선정자들에게 서울 종로구 C 대72. 7㎡ 지상

별지 도면 표시 1, 2, 4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3부분 담장을철거하고,위 ⑩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 및 선정자 D은 서울 종로구 C 대 72.7㎡(이하 'C 토지'라 한다)를 10/727, 597/727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, 선정자 E, F은 C 토지에 인접한 G 대 105.8㎡(이하 'G 토지'라 한다)를 867/1058, 191/105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며,원고 A은 위 각 토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302호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C 토지와 인접한 H 대 95.9㎡ (이하 'H 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. 8. 1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1내지 4, 갑 제2호증의 2, 을 제4호증의 각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피고 소유의 H 지상 건물의 담장이 원고 및 선정자 D 등이 공유하는 C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별지1도면 표시 1, 2, 4, 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G)부분 5.376㎡에 설치되어 있으므로,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⑪부분담장을 철거하고,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피고 소유 담장의 경계침범 여부

1) 살피건대,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유 담장이 원고 등이 소유하는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는 반면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2016. 12. 20.자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

종합하면, H 토지와 C 토지는 별지2감정도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인접하고 있고, 피고 소유의 담장은 별지2감정도 현7, 4, 현9, 현8, 현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, 위 담장이 위치한 선내(나) 부분은 피고 소유 H 토지의 경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감정인 I의 2015. 11. 19.자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유의 담장이 H 토지의 경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2)이에 대하여 원고는, ① 감정인 I의 2015. 11. 19.자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는 J동 각 토지 및 담장선의지점간 거리를 실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실측한 것처럼 허위 감정도를 작성한 것으로서 측량방법이 잘못된 것이고, ② 측량의 기초가 된 H 토지의 지적도 경계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법원 감정인의 측량결과는 신뢰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다17791판결 등 참조), 갑 제14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, H 각 토지에 대한 최초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은 측판측량법이고, 2회에 걸친 법원감정에서 사용한 측량방법은 전자평판측량방법인 사실, 법원감정인들은 C, H 각 토지 인근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찾아 기지점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여기에 C, H 각 토지는 수치지적이 아닌 도해지적지역(축척 600분의 1)에 해당하므로 경계점 간 거리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면적측정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, 측판측량법과 전자평판측량법은 사용하는 장비만 다를 뿐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그 측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, 감정인 I의 2015. 11. 19.자 측량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는 적법한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7호증, 을 제2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

종로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선정자 D 등이 C, H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, 위 위원회에서 2013. 9. 5. 'H 토지에 관하여 1913. 6. 2. 최초지적도가 작성된 이후 도면 재작성과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 토지의 지적경계선이 최초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어 위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하다'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, 이에 따라 종로구청에서 2013. 10. 23.경 H 토지와 인접토지인 K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최초 등록된 폐쇄지적도 대로 지적도를 직권으로 정정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 소유의 H 토지에 관하여는 잘못 등록된 지적경계선에 관하여 2013. 10. 23.경 등록 정정이 이루어졌고, C, H 각 토지에 관한 법원측량감정은 등록 정정 이후의 지적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따라서 피고 소유 담장이 C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혜진

별지